

1. 關於「臺灣省」

- 가. **배정방법** : 신청 자물차(자물차등록번호 상 소유자 기준) 및 거주 정보(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아래 배정표상 결과를 확인하여 고득점 순으로 배정
- 나. **배정대상** : 참가 신청기간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참가 배정
- ※ 참가 배정 이후에는 여유분 불참 시 수시 배정
- 다. **배정 우선순위에** 우선순위를 고득점 순으로 배정
- 1) 1순위 : 배정(신청일 현재 신청 동(洞) 내 거주하는 장애인들 1~3명
(사유)에 맞은 1~4급, 상이 국가 유공자, 고령자 복유익금 분자 등
고득점 순
- ※ 동점 시 우선순위 : ①장애등급이 높은 자 ②연대 전입일이 아른 자
- 2) 2순위 : (순위 우선 배정 후 마모구 관내(이하 '관내') 거주자 중에서
고득점 순
- ※ 동점 시 우선순위 : ①관내 전입일이 아른 자 ②자물차 배기량
이 적은 자물차
- 3) 3순위 : 2순위 배정 후 비거주자(관내 사업자·재직자) 중 고득점 순
- ※ 동점 시 우선순위 : ①관내 사업자·재직자(재직자는 그 사업장 재직
기간이 아른 자 ②자물차 배기량이 적은 자물차

《丑 1》 晴窗燕

[illegible]

- [illegible]

2 우선배정 제외 대상

- 가. 관공 법원상 차고지(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자들차
나. 동업 주주식(상업용) 차고지(주차장) 2개 구획(전용구획 포함) 이상에
동일 배정자가 없음. 즉 동업 상가에 동일 배정자 배정 의무를
충족하고 우리지역이 배정 취소 등 임의 차고지(주차장) 동점 주주식(상업용)
2차용 이상 상점(상업용) 1차용만 거주자를 인정하고 나머지 차고지
우선배정에서 제외함

- [illegible]

3. 배경(시점) 유전

- 가. 주차장은 개별 구획 배정이 아닌 구간제 구간 공동 이용제에 배정하며 이용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함. 주차요금은 이용기간 요금을 산정하여 함. [단, 분할 신청 시 9개월 할부 분할 가능]
- 나. 주차요금을 분할 신청자 미납한 경우 배정 취소하고 취소당한 후순위 (또는 대기자)에게 배정함.
- ※ 주차요금 납부기한 위반 시 별도 예고 없이 배정 취소됨
- 다. 거주자인 신청자가 적게 존재할 경우 (부무포함) 또는 현재지대의 소유 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거주지**로 **동대 신청**하여 거주지로 간주함. [단, 주민등록지 동대 과세구획이 없는 동으로 입몰 시에 한함]
- 라.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한 자동차로 **거주지** 동대 신청할 때, 적지 중첩시 동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거주지로 배정함.
- 마. 개인운송사업차-자동차(개인용차), 25톤 미만의 개인용물 및 화물)과 경차 소유인 경우 거주지로 간주함.
- 바. 경차 등으로 주차구획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 불가 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순으로 배정 중지한다. ① 취소함. [단, 다구간 여유로 발생으로 수선 배정 시 우선 배정 가능] ② 해당 구간 배정없이 높은 차 고배정 후순위차 중 저용량차
- 사. 주차장은 20%에 한하여 임대할 수 없고 자동차 변경 시 주차장을 교체해야 함.
- 아. 용도 이용 중지 시에는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모두 환불함.
- 자.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차. 배정 후 차종 변경시 배정절차를 재신청하여 재배정하며, 차종 변경 전 부여되었던 거점을 인정받으려면 신청일로부터 10일내에 관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재배정 말락 시 변경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신청일로부터) 말일까지 말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 10일)까지 이용가능]

- 九 배정율 1가구 1주택(100배정율) 배정율 원칙으로 함

4. 배정 취소 요건(우리공단 직권 취소)

- [illegible]

5.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유의 사항)

- 가. 주차장 미부족 시 배정 의무를 무기한에 연속(연인) 대상이 될 수 있음.
- 나. 주차장 권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항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오손은 책임자인 책임자지 책임으로 주차장 수락 권리자인 우리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다. 정당한 배정 차량, 이용기간,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에 다른 지정 이용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연속(연인) 대상이 됨.
- 라. 신청 내용과 결하는 신청인이 확인하여 하며 연속(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이 차량의 책임임.
- 마. 배정 의무는 불포도 공시행지 않으므로 권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 바. 미부족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 신청한 지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그 밖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한 사항은 우리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6. 주치요금 기준(별정)

구분	종료 (20년1월)	주상 (20년1월)	야간 (20년1월)	비고
거주자	4만원	3만원	2만원	일반국민 생활
비거주자	5만원	3만5천원	2만5천원	일반국민 생활
시설주자중	5만원	3만6천원	2만4천원	일반국민 생활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 02-300-5042~5045, FAX 02-376-4068)